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

제출년월일 : 95년 5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령안」이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도의 시행지침에 의거 정원관리상 시와 의회사무국으로 이원화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원승인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본청에 포함된 의회사무국 정원을 본청 다음에 따로 구분 (의회사무국: 16명)
- 정원승인된 단체장 및 청소차량운전원 각 1명을 본청의 정원에 증원 (본청: 427명)

3. 근거법령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95. 5. 15)
-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승인 (95. 5. 16)
- 차량운전원 정원승인 (95. 3. 21)

- 첨 부 : 1.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기타참고자료

의 안 설 명

< 요 약 >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 본청에 포함된 「의회사무국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구분
- 승인된 정원을 본청에 증원 : 단체장 및 청소차량운전원을 본청정원에 증원(2명 증)
(지방자치단체장 ⇒ 정무직 1명, 운전원 ⇒ 기능10등급 1명)

개정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1,072명

개정근거

-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 지방자치단체장 및 차량운전원 정원 승인

개정요지

-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정원의 총수중 본청에 포함된 의회사무국 정원을 본청 다음에 따로 구분
- 정원 승인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청소차량 운전원 각1명을 본청의 지방공무원정원에 증원

신·구대비표

< 제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현 행	개 정 안
1. 본 청 : 4 4 1 명	1. 본 청 : 4 2 7 명
2. 직속기관 : 1 0 1 명	2. 의회사무국 : 1 6 명
3. 사업소 : 1 2 5 명	3. 직속기관 : 1 0 1 명
4. 읍면동 : 4 0 3 명	4. 사업소 : 1 2 5 명
	5. 읍면동 : 4 0 3 명

참고사항

- 기구·정원규정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시달 : 지방 12200 - 700 (95. 5. 15)호
-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승인 : 지방 12230 - 701 (95. 5. 16)호
- 차량운전원 정원 승인 : 지방 12230 - 410 (95. 3. 21)호

제천시조례 제 호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증 제천시의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삽입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1호 본청 정원중 '441명'을 '427명'으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회사무국 : 16명

제3조증 시의 본청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청의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1명 증원은 1995년 7월1일
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원의총수) 제천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본 청 : <u>441명</u> <u>(신 설)</u> <u>2 - 4 (생 약)</u></p>	<p>제2조 (정원의총수) 제천시의 본청, <u>의회사무국</u>, 소속기관 및 ----- -----</p> <p>1. 본 청 : <u>427명</u> 2. <u>의회사무국</u> : <u>16명</u> <u>3 - 5 (현행 제2호 내지 4호와 같음)</u></p>
<p>제3조 (직급별 정원의규정) 시의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조 (직급별 정원의규정) 시의본청, <u>의회사무국</u>, 소속기관 및 ----- -----</p>

충 청 북 도

(12)

우 (360-765) 청주시 문과동 89 / 전화 220 - 2224 / 전송 2229, 2239 / 달당: 민병완

문서번호 지방 12200 - 700
 시행일자 1995. 5. 15. (10년)
 (경유)

수신 수신처 참조:
 참조

설 시 장		115	지 시
점	일 자	1995. 5. 15	결
시	간		무 시장
수	번 호	197	재·주
번	처 리 과	총무과	과
호	장	장	장
급	급	급	급
당	자	자	자

제2부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시달

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령안」이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통 개령령 시행과 관련한 추속조치를 위하여 따로 풀이 내용과 같이 지침을 알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2. 시), 군에서는 조례와 규칙 개정이 '95. 5. 31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방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회 소집 등 시행에 차질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별첨 기구,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 지침 1부. (별승)

충 청 북 도 지



수신처 대(01-11), 환경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총무과장

< 예 시 >

- 사업소 폐지 → 본청과 신설 (X)
- 직속기관과 폐지 → 본청과 신설 (X)
- 사업소 폐지 → 출장소, 직속기관 보강 (O)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당시 규칙 개정 절차나 조정 승인되어 진행 중인 사항은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

바.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포함 관리

-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통합하여 정원 관리의 이원화 문제점 해소
※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별도 유지

사. 전임 전문직 공무원 채용 억제

-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 때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한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해야 함.
- 이 영 시행과 함께,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으로 증원이 어려운 경우에 채용하는 전임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예산에 의한 전임전문직 채용은 불가함.
- 이 영 시행 당시 정원 범위 밖의 예산에 의해 채용하는 전임 전문직 공무원 직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반직 정원을 조치해야 함.
※ 전문직 직위에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정원 조치 불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제작자
필자
1995년 5월 16일

충 청 북 도

우 (360-763) 경주군 89 / 전화 220-2224 / 전송 (행) 2229 / 담당 : 정일택

문서번호 차방 12230 ~ 701

시행일자 1995. 5. 16. (영구)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도지사
보존	영구	
부지사		정일택
내부국장	31.	
지방과장	31.	법무담당관
조직관리	31.	법제계장
제정		법제심사계장
기안	7급 정일택	형조

제목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

'95. 7. 1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원과 '95 신규구입 소방장비(고가사다리차, 구 난 차, 화학 차 등)와 조달 구입 요청한 소방장비의 운전원 및 조작원의 정원을 충원함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따로붙임과 같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덧붙임 1. 조례개정 방침 결정문 1부.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제 2 안)

수신 대 (01-11)

참조 시정, 충무, 내부과장

제목 지방자치단체장 정원 승인

1.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 조치와 관련하여 '95. 7. 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따로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5월 중 정원조례개정 절차를 완료하기 바라며,

2. 관련법규(규칙에 한함) 개정은 사전보고를 필한 것으로 간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덧붙임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서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사

내부
2642

문서번호 : 치방 1220- 410
문서번호

1985.

발신 : 내무부장관

수신 : 제천시장

제목 : 증장비(차량, 소방차, 중기) 운전원 정원승인

① 문서번호 : 제 410

② 승인일자 : 1985년 3월 21일

③ 승인내역 :

구분 기관별	직종	급류	승인인원	비고
제천시(본청)	기능직(운전)	10등급	1명	한정관리자
• 정관시행일 : 조례공포시행일				
이하여백				

2102-18A
1981.6.26 승인

190mm x 268mm
신문용지(2급) 60g/m²